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4615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redacted]은행
	2. [redacted]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4구합7032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4.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0.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 대하여 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1,921,37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989,970원, 지방교육세 384,2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행 중 "제17조 제1항" 다음에 "중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1행부터 6면 14행까지(5. 나.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86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4. 1. 1. 이후 처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재산세부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데,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내용도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과세객체로 삼은 것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재산세 등 부과대상인 이 사건 신탁자산을 보유하는 행위이다. 위 보유행위에 따른 재산세 등이 누구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는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던 법령인 개정법에 의하여 원고 하나은행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 부분 원고 [redacted]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6면 밑에서 2행 중 "허용될 수 없다."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2헌바424 결정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7면 마지막행 중 "마련이라는 점"을 "마련이며,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8면 1, 2행 중 "신뢰의 손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신뢰의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신뢰보호원칙이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